

2021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시설, 공업)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시설, 공업)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위 개요

직렬(직류)	직급	담당예정업무	선발예정인원
시설 (건축)	지방시설 서기보 (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개축 및 이전 시설사업 건축분야 설계/집행/감독 ○ 각급학교(기관) 건축 시설사업 추진 ○ 내진보강, 석면교체 등 시설물 안전관리 ○ 기타 기관장이 분장하는 업무 	4명
시설 (일반토목)	지방시설 서기보 (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개축 및 이전 시설사업 토목분야 설계/집행/감독 ○ 각급학교(기관) 토목 시설사업 추진 ○ 토목시설 유지관리 및 하자 검사 ○ 기타 기관장이 분장하는 업무 	1명
공업 (일반기계)	지방공업 서기보 (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개축 및 이전 기계설비, 소방기계 설계/집행/감독 ○ 각급학교(기관) 기계설비사업 추진 ○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사업 추진 ○ 기타 기관장이 분장하는 업무 	1명
공업 (일반전기)	지방공업 서기보 (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개축 및 이전 전기설비, 소방전기 설계/집행/감독 ○ 각급학교(기관) 전기설비 사업 추진 ○ LED조명기기 교체 개선 관리 ○ 기타 기관장이 분장하는 업무 	1명
합 계			7명

※ 근무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 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
- 성별: 제한없음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사람
- 거주지제한(아래 1번과 2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있는 자
 -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광역시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 거주기간 합산요건(3년) 계산 방법은 민법 제160조 제1항에 따름

나. 자격요건(기준일: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직렬(직류) [직급]	자격 요건										
<p>시설(건축) [지방시설서기보]</p>	<p>○ 아래 각 호의 임용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 조건을 갖춘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자격법」 상 건축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상 건축 관련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건축 관련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 건축 관련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기술사</td> <td>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td> </tr> <tr> <td>기능장</td> <td>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td> </tr> <tr> <td>기사</td> <td>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td> </tr> <tr> <td>산업기사</td> <td>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td> </tr> <tr> <td>기능사</td> <td>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td> </tr> </table>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p>시설 (일반토목) [지방시설서기보]</p>	<p>○ 아래 각 호의 임용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 조건을 갖춘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자격법」 상 토목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상 토목 관련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토목 관련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 토목 관련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기술사</td> <td>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td> </tr> <tr> <td>기사</td> <td>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td> </tr> <tr> <td>산업기사</td> <td>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td> </tr> <tr> <td>기능사</td> <td>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td> </tr> </table>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p>공업 (일반기계) [지방공업서기보]</p>	<p>○ 아래 각 호의 임용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 조건을 갖춘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계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계 관련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기계 관련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 기계 관련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렬(직류) [직급]	자격 요건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 data-bbox="411 315 1426 371">국가기술훈자격법에 의한 자격증</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11 371 592 443">기술사</td> <td data-bbox="592 371 1426 443">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td> </tr> <tr> <td data-bbox="411 443 592 515">기능장</td> <td data-bbox="592 443 1426 515">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td> </tr> <tr> <td data-bbox="411 515 592 627">기사</td> <td data-bbox="592 515 1426 627">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td> </tr> <tr> <td data-bbox="411 627 592 772">산업기사</td> <td data-bbox="592 627 1426 772">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td> </tr> <tr> <td data-bbox="411 772 592 952">기능사</td> <td data-bbox="592 772 1426 952">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td> </tr> </tbody> </table>	국가기술훈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국가기술훈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p data-bbox="164 1265 381 1377">공업 (일반전기) [지방공업서기보]</p>	<p data-bbox="422 967 1295 1003">○ 아래 각 호의 임용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 조건을 갖춘 사람</p> <ul data-bbox="438 1014 1420 1232"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훈자격법」 상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국가기술훈자격법」 상 전기 관련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기 관련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 전기 관련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table border="1" data-bbox="411 1243 1426 1664"> <thead> <tr> <th colspan="2" data-bbox="411 1249 1426 1305">국가기술훈자격법에 의한 자격증</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11 1305 592 1377">기술사</td> <td data-bbox="592 1305 1426 1377">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td> </tr> <tr> <td data-bbox="411 1377 592 1449">기능장</td> <td data-bbox="592 1377 1426 1449">전기</td> </tr> <tr> <td data-bbox="411 1449 592 1523">기사</td> <td data-bbox="592 1449 1426 1523">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td> </tr> <tr> <td data-bbox="411 1523 592 1594">산업기사</td> <td data-bbox="592 1523 1426 1594">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td> </tr> <tr> <td data-bbox="411 1594 592 1664">기능사</td> <td data-bbox="592 1594 1426 1664">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td> </tr> </tbody> </table>	국가기술훈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국가기술훈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산업기사 이상: 기술사, 기능장, 기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응시 자격요건을 갖춘 후, 관련분야의 국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등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다. 우대조건(기준일: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직렬(직류)	우대 조건(가점 부여)
<p>시설 (건축·일반토목)</p> <p>공업 (일반기계·일반전기)</p>	<p>관련분야 근무경력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후,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따라 연차별 차등 배점</p> <p>※ 관련분야 실무경력 : 응시 자격요건을 갖춘 후, 관련분야의 국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등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함 - 응시 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은 제외함</p> <p>※ 직무관련분야 : 채용예정 직급의 담당 예정 업무</p>

※ 우대 조건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3. 시험방법

가. 시험주관: 시험단계별(서류전형, 면접시험)로 시험위원이 주관함

나. 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심사 기준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시험위원들이 협의·결정함

다. 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에 대해 상·중·하 단계별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4. 시험일정

시행계획 공고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 11.(월) ~ 1. 20.(수)	1. 20.(수) ~ 1. 22.(금)	2. 3.(수)	2. 5.(금)	2. 17.(수)	2. 19.(금)

- ※ 공고 및 발표는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www.ice.go.kr, 행정정보/시험정보)에 게시하며, **합격여부에 대하여 개별통지하지 않음**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1. 1. 20.(수) ~ 1. 22.(금) 3일간

나.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원서접수는 **등기우편으로만 접수**(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 불가)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등기우편 발송 전 반드시 담당자(☎032-420-6513)에게 사전 유선연락 후 응시원서 발송
(**익일특급 등기우편 발송**)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원서 상의 휴대폰으로 통보 예정, 응시번호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응시자는 유선 연락(☎032-420-6513) 바라며, 문자 미확인(수신 불가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우편 발송 주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봉투에 “**경력직 공무원 채용서류 재중**” 명기>

다. 응시 수수료: 5,000원(우편발송 시 현금 동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제출 시 응시 수수료 면제

라.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응시원서는 집계를 이용하여 고정(스태이플러 사용 금지),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되 자격증 등 원본이 유일한 경우 사본 제출
 - ※ 자격증 등 원본 유일 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 원본 지참
-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각종 증빙 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을 원칙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함
 - 단, 현재 재직 중인 기관의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함
- 제출서류 중 불분명한 증빙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제출 서류 목록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자필 작성 후 제출	필수
2. 서류전형 응시요건 본인의견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서명 필수	필수
3.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 상 경력은 경력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증빙 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 공무원인 경우 이력서와 별도로 인사기록카드 제출	필수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A4 용지 2매 이내 작성	필수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임용예정 직위에서의 업무 추진계획(방법, 일정 등)을 A4 용지 5매 이내로 작성	필수
6. 자격증명서	◦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 사본(필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장에 원본 지참	필수 (해당자)
7.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의 서식)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인정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서류 또는 기재사항이 미비하여 경력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불인정(스캔, E-mail 칼라출력, 팩스 수신본 등 사본제출 불가)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업무인지를 판단하게	해당자

구분	내용	비고
	<p>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근직, 비상근직(시간제) 여부 명시 ※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8. 주민등록 초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후 발해분으로 제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9.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생략 	필수
9.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 초본 확인용 ※ 8. 주민등록 초본 제출 시, 제출 생략 	해당자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명필수 	필수
11.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명필수 	필수
12.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증명서의 경력 검증에 사용 ※ 경력증명서 제출자 반드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해당자

7. 보수 및 복무

가. 보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제3항의 규정 등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을 준용

나. 복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8. 기타

가. 1인당 1개 직류에 지원 가능(복수지원 금지)

나.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인사 관계법령을 준용함

다. 재공고: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나 선발예정 인원과 같은 경우에는 원서접수 및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함

재공고 시 종전 공고의 기 접수자는 재 접수한 것으로 간주함

- 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함
- 마.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바. 시험실시 결과 임용예정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사. 본 시험시행계획은 우리 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 아.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 032-420-6513)로 문의바람

※ 별지 서식

순번	별지 서식
1	응시원서
2	서류전형 응시요건 본인의견서
3	이력서
4	자기소개서
5	직무수행계획서
6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8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 편철)

1. 응시원서 제출 미제출
2. 서류전형 응시요건 본인의견서 제출 미제출
3. 이력서 제출 미제출
4. 자기소개서 제출 미제출
5. 직무수행계획서 제출 미제출
6. 자격증명서(응시자격) 제출 미제출
7. 경력증명서(해당자) 제출 미제출
8. 주민등록초본 제출 미제출
9.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해당자) 제출 미제출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제출 미제출
11.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제출 미제출
12.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 제출 미제출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표시(✓) 하시면 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서명)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원서

본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기술직)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직렬)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직급 (응시직렬)	
성명	(한글)	(한자)	
2021년 월 일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응시직렬):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 및 직렬을 기재함
 - 응시직급: 지방시설서기보 또는 지방공업서기보
 - 응시직렬: 시설_건축, 시설_일반토목, 공업_일반기계, 공업_일반전기 중 선택 기재
3.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명 기재
6. 응시원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서류전형 응시요건 본인의견서 작성요령

◎ 『서류전형 응시요건 본인의견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공통요건 및 자격요건 해당란에 표시

※ 공통요건 1, 2 모두 충족하고, 자격요건 하나 이상 충족하여야 함

2.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기재

3.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현황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대회 내역 기재

4. 관련분야 실무경력 현황: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 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경력증명서로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자격요건 해당 여부는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판단함)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후 국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등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 인정

이 력 서

1.				
응시 번호	※ 미기재	응시 분야	※ 예시 지방시설취직기보 (시설-일반토목)	성 명

2. (,)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 관련분야 실무경력 사항만 기재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	

※ 경력: 경력증명서로 증빙할 수 있는 관련분야 실무경력 사항만 기재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해야 함)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서명)

자 기 소 개 서

- A4용지 2페이지 이내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글씨크기 휴먼명조 13P 흑백, 줄 간격 160mm, 용지여백 좌·우 20mm, 상 20mm, 하 10mm, 머리말 15mm, 꼬리말 10mm)
- 지원동기, 관련분야 수행경험, 현재까지 달성한 업적과 장점(전문성), 성공이나 실패에서 얻은 교훈 등을 자유롭게 기술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기재 금지(불필요한 내용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A4용지 5페이지 이내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글씨크기 휴먼명조 13P 흑백, 줄 간격 160mm, 용지여백 좌·우 20mm, 상 20mm, 하 10mm, 머리말 15mm, 꼬리말 10mm)
- 정책(사업) 목표, 추진전략 등 채용예정 업무에 대해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업무계획 등을 자유롭게 기술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기재 금지(불필요한 내용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2021. . . 작 성 자 : (서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인천광역시교육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관련 법규

순번	관련 규정
1	◦ 지방공무원법(발체)
2	◦ 지방공무원 임용령(발체)
3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발체)
4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발체)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관련 법규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하던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하던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나 직무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연구 또는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및 이에 준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10. 제25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사람과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11.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 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증이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요구)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 1.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직급
- 2.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이 불가피한 사유
- 3.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사람이 갖춰야 할 학력·경력·연구실적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임용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의 요구가 없어도 직접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①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과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제5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이나 별정직 1급 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사람을 퇴직과 동시에 1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하다가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나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하던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1. 법 제27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제4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로 한다)에 대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퇴직한 공무원을 3년 이내에 퇴직 시 재직하던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의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4. 법 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할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5. 법 제27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시험방법은 5급 이상 공무원의 시험에 관하여는 제5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시험에 관하여는 제54조 중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시험에 대해서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④ 임용권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3.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4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제11조(시험위원의 구성 등)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을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서류전형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정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위원에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 2에 따라 각종 시험요구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7과 같다.